

은닉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분할납부기간과 일시납부 시  
매각대금(제77조제2항 관련)

| 반환의 원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분할납부하는 때의<br>매각대금 분할납부기간 | 일시납부하는 때의<br>매각대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1. 자진반환 또는 제소 전 화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2년 이하                   | 매각가격의 20퍼센트       |
| 2. 제1심 소송 진행 중의 화해<br>또는 청구의 인낙                       | 10년 이하                   | 매각가격의 30퍼센트       |
| 3. 항소 제기 전 항소권의 포<br>기 또는 항소 제기기간의 경<br>과로 인한 항소권의 소멸 | 8년 이하                    | 매각가격의 40퍼센트       |
| 4. 항소의 취하, 항소심의 소송<br>진행 중 화해 또는 청구의<br>인낙            | 6년 이하                    | 매각가격의 50퍼센트       |
| 5. 상고 제기 전 상고권의 포<br>기 또는 상고 제기기간의 경<br>과로 인한 상고권의 소멸 | 4년 이하                    | 매각가격의 60퍼센트       |
| 6. 상고의 취하, 상고심의 소송<br>진행 중 화해 또는 청구의<br>인낙            | 2년 이하                    | 매각가격의 70퍼센트       |